

리스크관리규정

제정 2006. 3. 10
개정 2006. 12. 8(개폐정리)
개정 2011. 2. 18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1. 6. 28
개정 2011. 12. 8
개정 2011. 12. 30(개폐정리)
개정 2013. 4. 30(개폐정리)
개정 2013. 6. 10(개폐정리)
개정 2013. 9. 30
개정 2015. 6. 30(개폐정리)
개정 2017. 3. 31
개정 2018. 2. 23
개정 2019. 4.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지속적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2조(적용범위) 리스크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리스크”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이 공사가치에 불리한 결과 또는 손실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개폐정리 2015. 6.30>
2.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천 및 그 규모와 영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예방, 축소 또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신용리스크”라 함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도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4.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이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부채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5.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일이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

한 자금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6.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무리스크 : 업무처리상의 오류, 사고, 부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나. 법률리스크: 법령의 제·개정, 판례, 제규정, 계약행위 등 당면한 각종 법적·제도적 환경하에서 공사가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 <개폐정리 2013.6.10., 2015. 6.30>

다. 경영관리리스크 : 경영에 대한 판단의 오류, 경영전략 시행의 착오, 새로운 금융환경 및 주택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실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라. 평판리스크 :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야기 등 외부의 인식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마. 전산리스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정지 및 오류발생, 컴퓨터 범죄 등 전산시스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7. “리스크성향”이라 함은 공사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의 수준을 말한다.<신설 2013.9.30.><개폐정리 2015. 6.30>

8. “리스크한도”라 함은 공사전체, 사업분야, 리스크유형 등 단위별로 허용된 최대 리스크 수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다.. <신설 2013.9.30.><개폐정리 2015. 6.30><개정 2017. 3.31.>

가. 위험자본한도 : 가용자본을 기준으로 설정·배분한 리스크 한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1) 총위험자본한도 :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가용자본이내에서 보유 위험액을 고려한 당해 필요 위험자본의 한도

(2) 리스크유형별 위험자본한도 : 총위험자본한도를 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리스크유형별로 배분한 개별 리스크의 위험자본의 한도<개정 2018. 2.23>

나. 기타 위험자본한도 : 위험자본한도 이외에 공사 대내외 리스크관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정하는 각종 한도

9.“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이라 함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공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관리기법을 말한다.<신설 2013.9.30.><개폐정리 2015. 6.30>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 제규정, 시장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리스크관리 목표) 리스크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영전략 및 목표 달성의 촉진<개폐정리 2015. 6.30>

2. 수익 및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도모

3. 리스크의 적시파악 및 대응으로 경영상의 위기 사전방지
4. 적절한 리스크분산을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5조(리스크관리 기본원칙) 리스크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리스크관리의 감독 및 통제는 영업활동과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리스크허용한도는 수익창출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리스크관리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보유하거나 발생시키는 개별리스크 소관부점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보고는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특정부문에의 과도한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6. 리스크관리는 안정성 및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등과 연계하여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리스크관리 조직

제1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삭제2013.9.30〉

제6조 〈삭제 2013.9.30〉

제7조 〈삭제 2013.9.30〉

제7조의2 〈삭제 2013.9.30〉

제7조의3 〈삭제 2013.9.30〉

제8조 〈삭제 2013.9.30〉

제8조의2 〈삭제 2013.9.30〉

제8조의3 〈삭제 2013.9.30〉

제9조 <삭제 2013.9.30>

제10조 <삭제 2013.9.30>

제2절 리스크관리협의회 <삭제 2013.9.30>

제11조 <삭제 2013.9.30>

제3절 리스크관리 주관부서 <제목 삭제 2013.9.30>

제12조(리스크관리 주관부서) ①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이라 한다)는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의 관리, 통제 및 보고 등을 통하여 경영진 및 위원회를 보좌한다.

② 주관부서의 역할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개별리스크 소관부점 <제목 삭제 2013.9.30>

제13조(개별리스크 소관부점) ① 개별리스크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각 해당 부서를 말한다.

② 소관부점은 리스크관리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소관부서의 역할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리스크관리담당자 <제목 삭제 2013.9.30>

제14조(리스크관리담당자) ① 공사 전체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소관부서의 원활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9.30><개폐정리 2015. 6.30>

② 리스크관리담당자의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리스크관리 대상 및 절차

제15조(리스크관리 대상) 리스크관리 대상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로 하며, 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리스크관리 절차) 리스크관리는 리스크 인식, 측정, 한도설정, 모니터

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에 따른다.

제17조(리스크 인식) ①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의 소재를 식별하고 분석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삭제 2011.12.8>

제18조(리스크 측정) ① 리스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측정한다.

1. 리스크는 일상적인 경영환경의 변동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도 측정한다.
2. 리스크는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3. 신용리스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개정 2013.9.30>

② 측정방법은 주기적으로 테스트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제19조(리스크 한도설정) ① 총위험자본한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개정 2017.3.31.>

1. 공사의 전략, 사업목표, 수익성 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개폐정리 2015. 6.30>
2. 영업상 부담하는 리스크 종류와 이에 따른 리스크 조합
3. 기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환경의 변화

② 리스크유형별 위험자본한도는 총위험자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개정 2017.3.31.>

1. 보유 가용자본 <개정 2018. 2.23>
2. 당해연도 실질 리스크 수준
3. 목표 자본적정성 비율 <개정 2018. 2.23>

③ 개별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측정수단에 의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총위험자본한도 및 리스크유형별위험자본한도 한도는 연1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 및 영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20조(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① 주관부서는 시장변화에 따른 리스크 규모의 변동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 부담량이 리스크한도 대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설정된 리스크 한도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한도초과시 또는 초과가 예상될 경우 소관부서장으로부터 그 원인 및 대책을 통보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회의체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리스크 보고)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주관부서장에게 제공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사장 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6.28, 2013.9.30>

1. 리스크는 계량화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리스크는 그 위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3. 리스크는 정확성, 적시성, 독립성 및 일관성 등의 보고원칙을 준수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3.9.30>
4. 긴급을 요하는 보고사항은 구두, 유선, 사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9.30>

제21조의2 (리스크 협의) ① 소관부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1>

1. <삭제 2019. 4.11>
2. <삭제 2019. 4.11>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삭제 2013.9.30>
6. <삭제 2019. 4.11>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리스크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리스크 반영의 적정성 또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1>

③ <삭제 2013.9.30>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리스크분석 결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개폐정리 2015. 6.30>
[본조신설 2011.12.8]

제22조 (위기관리계획) ① 사장 또는 위원회는 현재 또는 예상치 못한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부담·경감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기관리계획에는 현재 또는 시나리오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 위기단계의 정의 및 위기단계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28]

제23조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① 공사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소관부서장, 주관부서장과 전산시스템 담당 부서장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23>

[본조신설 2011.6.28]

제 4 장 리스크관리지표 <장 신설 2013.9.30>

제24조(리스크관리지표) ① 주관부서는 리스크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원칙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 제19조(리스크 한도설정) 및 제20조(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는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제4조(다른 사규의 개정) 사규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규분류표에 제11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편 별	분 류	사규번호	사 규 명	소관부점
제 11 편	리스크	11-1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팀

부 칙(2006. 12. 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8)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8)

이 규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0)

이 규정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0)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31)

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23)

이 규정은 201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1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1조의2 관련) <신설 2019. 4.11>

리스크 협의 사항

1.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2. 신상품과 신사업의 개발 및 변경
3. 다음 각 호의 사규 제·개정
 - 가. 이사회규정 [별표] 중 영업, 관리, 재무, 매입, 편입, 수탁·위탁, 정비사업 관련 사규
 - 나. 기금사업 관련 사규
4. 보증 요건과 심사기준의 설정 및 변경
5. 기금 출자·투자·융자의 요건과 심사기준의 설정 및 변경
6.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